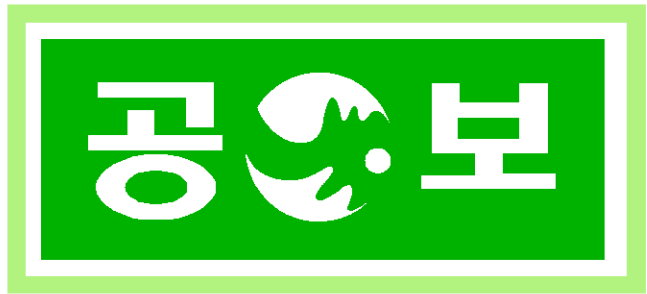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787 호 2012. 11. 30(금)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94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95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7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88호[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0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90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14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9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민원지적과 분장사무 30을 삭제하고, 31부터 42까지를 30부터 41까지로
하고, 51부터 71까지를 42부터 62까지로 한다.

같은 표 도시녹지과 분장사무 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같은 표 농수산과 분장사무 71을 다음과 같이 한다.

71.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생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본청 실과 사무분장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1.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2. 민원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민원사무편람 제작 및 서식, 절차, 방법개선에 관한 사항 5. 민원회방문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8. 어디서나 민원발급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상담 및 행정안내에 관한 사항 11. 무의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가족민원등록에 관한 사항 13. 주·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4. 사실증명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6.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7. 인감증명 관리에 관한 사항 18.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개업에 관한 사항 20.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21.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2. 개발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23. 개발공시지가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4. 개발공시지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25. 개발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26. 구·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지적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8.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지적측량 허가에 관한 사항 <삭제> 30.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 31. 지적정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적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33.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34. 지적측량 사업에 관한 사항 35. 등록명도상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36. 공유도지 분할에 관한 특별 시행에 관한 사항 37.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에 관한 사항 38.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업무에 관한 사항 39. 지적등기부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40. 지적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41. 지적인원처리에 관한 사항 4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3.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44. 토지의 이용의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45.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46.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사항 47.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48.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49. 국가소송(미등기 토지)에 관한 사항 50. 지적정보센터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5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5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53. 지적분할지 정리에 관한 사항 54. 공공응용지 및 집단지 일제조사 정리에 관한 사항 55. KLS 운영·관리 및 지적전산자료 정비에 관한 사항 56. 정밀연속도 제작에 관한 사항 57. 지형·지명조사 정비에 관한 사항 58.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59. 일반측량법에 관한 사항 60.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61. 국가기초구역 및 지적번호 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시녹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08-3-3> 4. 도시계획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08-3-3> 5.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8. 공원 및 녹지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9. 소유사실 증명원 발급(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관한 사항 10. 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2. 영림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13.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14.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관리에 관한 사항 15. 산불방지 대책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6.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17.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임목벌채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9. 입산신고, 통제 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0. 지역공동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1.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22.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입안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4. 가로수 식재 보호에 관한 사항 25.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26. 구 단위 국토공원화 추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7. 국토공원사업 추진 기술지도 및 묘목, 자재 등 확보 공급에 관한 사항 28. 산림동원에 관한 사항 29. 시민참여 녹화사업 및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30. 마을쉼터 조성 및 나무심기 사업에 관한 사항 31. 학교 주변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32. 가로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33. 공원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4.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5. 도시공원법에 의한 정용, 사용취소 및 감독처분 등에 관한 사항 36.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7.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08-12-24> 39.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농수산과	1.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업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농업에 관한 사항 6. 수경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7. 농가부업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 개간인가에 관한 사항 9. 쌀농업 등 보전직물제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4. 농업진흥지역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업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업진흥사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7.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8. 농림시설 재해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9. 농업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20. 영농부담완화 대책 관리에 관한 사항 21. 농업진흥사업 및 유전자 변형표시 지도에 관한 사항 22.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23. 과수생산사업 정비에 관한 사항 24. 가축사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25. 동물방역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6. 영농에 및 특용작물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27. 농업진흥사업 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8. 농업진흥사업 축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29.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0.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식량작물 생산장려에 관한 사항 32. 농작물 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3. 농작물진출에 관한 사항 34. 축산물지방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5.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36. 농축산물 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7. 축산물 수산물 운반업, 판매업 허가에 관한 사항 38.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9. 유기농산물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40.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1. 어선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42. 어선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43. 어선등록 말소 신청 및 어업휴업 신고에 관한 사항 44. 선박등록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45.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46. 어선 건조발주에 관한 사항 47.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항 48.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항 49. 수산증양식 및 어로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0.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51.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52.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 53. 어항에 관한 사항 54. 어촌계 등 단체에 관한 사항 55.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에 관한 사항 56.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57. 어업인 관리에 관한 사항 58.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59.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0.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61.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62.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3. 수산재해에 관한 사항 64. 어업권분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5.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 66.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67.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8. 저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 69.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에 관한 사항 70.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71. 구 식물자원화시설 재생에 관한 사항 <변경>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중산목욕장 담당부서 지정, 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업무의 담당 부서를 일원화하고, 시설재생업무의 사무명칭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산목욕장 분장사무 신설

- 담당부서 지정 : 회계과
- 신설 사유 : 중산목욕장 건립예정에 따른 원할한 업무추진

나. 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업무 담당부서 일원화

- 담당부서 변경
 - 당초 : 총무국 민원지적과
 - 변경 : 건설도시국 도시녹지과
- 조정 사유
 - 토지분할허가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의 내용 또는 다른 도시계획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업무로서 관련부서의 소관 법령에 맞도록 업무를 조정

다. 농수산물 시설재생담당 분장사무 명칭변경

- 분장사무
 - 당초 : 장난감미술관 설치에 관한 사항
 - 변경 :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생에 관한 사항
- 변경사유
 - 농수산물 “장난감미술관추진담당” 신설이후 “시설재생”으로 담당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분장사무에 맞게 명칭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윤종오



2012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395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회계과 단위업무 11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부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부 청 장	
		실무자	담당		
1. ~ 10. <생략>					
11. 중산목욕장 유지 관리 및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가. 중산목욕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	기안			○
	나. 중산목욕장 위탁운영자 선정	기안			○
	다. 그 밖의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	기안		○	

민원지적과 단위업무 15번은 삭제하며, 단위업무 16번부터 34번까지를 단위업무 15번부터 33번까지로 한다.

도시녹지과 단위업무 4번 중 세부사무명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부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기 안 결 정 사 유	
		담당자		실· 과장	국 장		부 국 장
		실무자	담당				
1. ~ 3. <생략>							
4. 개발행위의 허가	가. ~ 사. <생략>						
	야. 토지분할 허가 및 불허가 <신설>	기안		○			
5. ~ 40. <생략>							

농수산과 단위업무 107번 중 “장난감미술관 설치”를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
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중산목욕장 담당부서 지정, 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업무의 담당 부서 일원화 및 시설재생업무의 사무명칭을 조정하고, 단위업무명과 세부사무의 전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산목욕장 단위업무 및 세부사무 전결사항(신설)

- 단위업무명 : 중산목욕장 유지관리 및 위탁자선정에 관한 사항
- 세부사무의 전결사항
 - 중산목욕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조례제정 등) (담당자 기안, 구청장 결재)
 - 중산목욕장 위탁운영자 선정 (담당자 기안, 구청장 결재)
 -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 (담당자 기안, 과장 전결)

나. 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업무 담당부서 일원화

- 단위업무명 및 세부사무의 전결사항
 - 민원지적과 : '토지분할허가 및 불허가'(담당자 기안, 과장 전결) 삭제
 - 도시녹지과 : '토지분할허가 및 불허가'(담당자 기안, 과장 전결) 신설

다. 농수산물 시설재생담당 단위업무명 변경

- 당초 : 장난감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변경 :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112조

나.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유종오



2012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 188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13명”을 “109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무기계약근로자(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의 정수

부 서 별 총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 수 원	환 경 미 화 원
	계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합 계 102	42	27	5	8	2	4	56
기획홍보실							
총 무 과 10	10	5	4	0	1	0	
주민참여과							
회 계 과							
문화체육과 7	7	7					
도 서 관 과 7	7	7		0			
세 무 과 1	1			1			
민원지적과 2	2			1	1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알자리과							
환경위생과 1	1	1					
환경미화과 57	1			1			56
건설방재과 6	2	1		1		4	
도시녹지과 2	2	2					
교통행정과 4	4	1		3			
건축주택과 2	2		1	1			
농수산과							
보 건 소							
농소2등 1	1	1					
농소3등 2	2	2					
효문동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총 계	경 비 청원경찰	단속감시청원경찰			
			계	그린벨트 단 속	과적차량 단 속	하천감시
합 계	7	1	6	3	2	1
기획홍보실						
총 무 과	1	1				
주민참여과						
회 계 과						
문화체육과						
도 서 관 과						
세 무 과	0	0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방재과	2		2		2	0
도시녹지과	2		2	2		
경제교통과						
건축주택과	1		1	1		
농 수 산 과	1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원경찰 현원 감소에 따른 총원 및 부서별 정수 조정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관련 별표 중 청원경찰의 정수 조정

가. 총원 감원 : △4 (11명→7명)

나. 부서별 감원

【총무과】

구 분	현 정원	조정 정원	증감 인원
경 비	2	1	△1

【세무과】

구 분	현 정원	조정 정원	증감 인원
경 비	1	0	△1

【건설방재과】

구 분	현 정원	조정 정원	증감 인원
단속감시	3	2	△1

【도시녹지과】

구 분	현 정원	조정 정원	증감 인원
단속감시	3	2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9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당직수당 지급액 명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수당 지급액을 변경할 때 마다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울산광역시, 타 구·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코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수당 금액 지정 조항 개정(제6조제5항)
 - 평일 숙직수당 5만원,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 6만원 (1회, 1명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 수당은 차등지급 할 수 있음.**

3.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나. 전화번호 : 052-241-7203, 팩스번호 : 052-241-7209

6. 참고사항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당직근부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p> <p>① ~ ④ (생략)</p> <p>⑤ 당직근부자에게 당직근부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부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평일 숙직수당 : 5만원(1회, 1명당)</p> <p>2. 휴부일 및 휴부일 전일 일·숙직수당 : 6만원(1회, 1명당)</p>	<p>제6조(당직근부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당직근부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부일 및 휴부일 전일 일·숙직수당은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 당직근부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